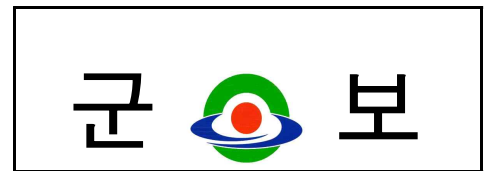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02호 2022. 11. 10.(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137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변경(안 제24조의2)

○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기준 강화

- 군도 : 200미터 ⇨ 500미터
- 농어촌도로(면도) : 300미터(신설)

○ 주거지에서의 이격거리 기준 강화

-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거지 : 300미터 ⇨ 500미터
- 10호 미만 주거지 : 150미터 ⇨ 300미터

○ 건축물 위의 설치 기준 강화

- 지붕 등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2미터 이하로 규정
- 동·식물관련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경과 후 가능
- 풍력발전시설 규제 완화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도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346, 팩스 : 054-650-6349
- 전자우편 : ugongisan@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어촌도로”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를 말한다.

제24조의2제2항제1호 중 “500미터(다만, 군도의 경우 200미터)”를 “500미터, 농어촌도로 중 면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150미터”를 “300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아야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한다.

제24조의2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24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그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 <u>농어촌도로</u> ”란 「 <u>농어촌도로 정비법</u> 」 제4조제1항에 따른 <u>면도</u> , <u>이도</u> , <u>농도</u> 를 말한다.
2. ~ 7. (생략)	3. ~ 8.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지구·구역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② ----- ----- ----- -----.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u>500미터</u> (다만, <u>군도의 경우 200미터</u>)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 <u>500미터</u> , <u>농어촌도로 중 면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의 경계로부터 <u>300미터</u>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 ----- <u>500미터</u> ----- -----.

6. 10호 미만의 주거지의 경우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1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
인 소유의 주택만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

7. 8.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
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
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
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발전시
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이하
“해당 건축물”이라 한다)의 대
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해당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대지가 있는 경
우(신청인 본인 소유의 건축

6. -----
----- 30

0미터 -----

-----.

-----.

7.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다만, 건축물

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아야하며, 「건축법 시

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

식물관련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여야한다.

물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
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
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
미터를 넘지 않을 경우

⑤ ~ ⑦ (생 략)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 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 및 제7항-----

-----.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자치법규명)	예천군 군계획 조례				
2.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 관 부 서	예천군 도시과	작 성 자	이름	권영모
	부서장	황재극		직급	시설주사보
	팀 장	김창영		연락처	054-650-6346
				이메일	ugongisan@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등	○ 피규제집단 :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자 ○ 이해관계자 : 발전시설 인근 지역주민 등				
5. 규제존속기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를 위해 별도의 존속기한 없음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기준 강화 - 군도 : 200미터 ⇨ 500미터 - 농어촌도로(면도) : 300미터(신설) ○ 주거지에서의 이격거리 기준 강화 -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거지 : 300미터 ⇨ 500미터 - 10호 미만 주거지 : 150미터 ⇨ 300미터 ○ 건축물 위의 설치 기준 강화 - 지붕 등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2미터 이하로 규정 - 동·식물관련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경과 후 가능 ○ 풍력발전시설 규제 완화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8. 참고사항	해당없음				

2.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기준 강화
 - 군도 : 200미터 ⇨ 500미터
 - 농어촌도로(면도) : 300미터(신설)
- 주거지에서의 이격거리 기준 강화
 -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거지 : 300미터 ⇨ 500미터
 - 10호 미만 주거지 : 150미터 ⇨ 300미터
- 건축물 위의 설치 기준 강화
 - 지붕 등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2미터 이하로 규정
 - 동·식물관련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경과 후 가능
- 풍력발전시설 규제 완화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2. “ <u>농어촌도로</u> ”란 「 <u>농어촌도로 정비법</u> 」 제4조제1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를 말한다.
2. ~ 7. (생략)	3. ~ 8.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지구	② ----- ----- -----.

• 구역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다만, 군도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 4. (생략)

5.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10호 미만의 주거지의 경우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15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 소유의 주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

1. -----
----- 500미터, 농어촌도로 중 면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

2. ~ 4. (현행과 같음)

5. -----
----- 500미터 -----
-----.

6. -----
----- 300미터 -----
-----.
-----.

7.·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

설치하는 경우. 다만,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이하 “해당 건축물”이라 한다)의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해당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대지가 있는 경우(신청인 본인 소유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을 경우

⑤ ~ ⑦ (생략)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다만,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아야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한다.

<삭 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 및 제7항-----

-----.

3.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태양광 발전시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각종 문제 대두
- 입지 가능한 토지를 외부에서 많이 매입·개발하고 있고, 자연환경 및 영농에 대한 직접 피해는 거주민이 겪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
 - 단위 조성비가 높아 관내 토지주는 발전사업 시행이 어려움
 - 태양광발전 소득 = 외부, 직·간접적 피해 = 거주민
 - ex) 그늘과 일조량 저하로 작물생육에 지장, 눈부심, 주변 온도 상승,

- 자연환경 저해, 배수체계 변경으로 유량 및 유속 증가 등
- 경지정리 된 우량농지에 동·식물관련 시설을 위장한 태양광시설 증가
 - ex) 식물·버섯재배사, 가축(토끼, 염소 등) 사육장 준공 후 태양광 시설
- 건물(지붕) 위 태양광시설 최고 높이에 대한 규제가 부분적으로 국한되어 있어 인근 농지에 그늘 피해와 농촌환경 훼손
 - 대상지 20m 이내 주택이 있을 경우에만 최고높이 2m 이내로 규정
 - ex) 고평들 경우, 축사 지붕 위 북측 모듈의 높이는 5m 정도로 영농에 지장

나. 규제의 신설(또는 강화)의 필요성

- 현재와 같은 추세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난립하게 될 경우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시설로 한번 설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발전시설의 입지 요건을 강화하여 농촌경관의 보호와 지역민들의 정주여건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다. 대안검토

- 현행유지 : 기존 규제로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려움

라. 기대효과

-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 및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갈등 해소
- 인근 시·군과의 규제 형평성 확보로 인·허가 쏠림 현상 완화
-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경관저해 및 그늘 피해 감소
- 농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4. 규제의 비용·편익의 비교 분석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없음

나. 규제에 따른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태양광 관련 사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경관·정주환경 등의 사회적 가치는 그 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등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천군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규제함.

6. 결론

- 현행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개정이 필요함
 -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운영상 미비점은 그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는 부분도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